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제1편 특허법 13~13p 번호 : 03	문제-보기(지문)	ㄱ. “실시”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ㄱ. "실시"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 · 사용 · 양도 · 대여 ·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수정 사유	문제-보기(지문)_오류
특허법 40~40p 번호 : 07	정답	① (○) 특허법은 수출을 실시행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특허법 제2조 제3호). 특허법 제2조(정의)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②~⑤ 생략 답 ⑤	① (×) 특허법은 수출을 실시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 제2조 제3호). 특허법 제2조(정의)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②~⑤ 생략 답 ①, ⑤
		수정 사유	정답_오류
특허법 54~54p	개념,공식-설명	④ 종속항 실시례 있는 경우, 특정방법 : 독립항과 이를 한정하는 종속항 등 여러 항으로 이루어진 특허발명 청구항의 기술내용을 파악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범위하게 규정된 독립항의 기술내용을 독립항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종속항의 기술구성이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나오는 특정의 실시례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判例 2004후2260)	④ 종속항 실시례 있는 경우, 특정방법 : 독립항과 이를 한정하는 종속항 등 여러 항으로 이루어진 특허발명 청구항의 기술내용을 파악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범위하게 규정된 독립항의 기술내용을 독립항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종속항의 기술구성이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나오는 특정의 실시례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判例 2005후1486)
		수정 사유	판례 번호 오류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제2편 상표법 55~55p 번호 : 02	문제-본문	③ (○) 상표법 제107조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침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判例 2006다22722).	③ (○) 상표법 제107조(구 상표법 제65조)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상표법 제109조(구 상표법 제67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침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判例 2006다22043 참조).
		수정 사유	해설 내용 오류
디자인보호법 59~59p 번호 : 10	해설	① (×)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디자인보호법 제119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17조 제1항).	① (×) 지식재산처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69조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제119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17조 제1항). ※ 시험 출제 이후 2022.2.3. 법 개정 : '특허심판원장' 삭제 ※ 2025.10.1. 법 개정 : '특허청장' → '지식재산처장', '산업통상자원부령' → '총리령' 명칭 변경
		수정 사유	해설_오류
디자인보호법 158p 번호 : 44	문제-보기(지문)	③ 디자인보호법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보정할 수 있다.	③ 디자인보호법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정할 수 있다.
		수정 사유	문제-보기(지문)_오류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특허법 198~198p 번호 : 05	해설	해설 ①~④ 생략 ⑤ (×) 도면뿐만 아니라 명세서도 보정이 가능하다.	해설 ①~④ 생략 ⑤ (×) 특허출원인은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특허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특허거절결정에 불복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는 없다(특허법 제47조 제1항 제3호, 제67조의2 제1항 제2호).
		수정 사유	해설_오류
디자인보호법 224~224p 번호 : 02	문제-보기(지문)	**02번 문제 4번 보기 지문** ④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되, 비밀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2번 문제 4번 지문 해설** ④ (×) 비밀디자인에 대해서는 과실의 추정 규정이 배제된다(디자인보호법 제116조 제1항).	**02번 문제 4번 보기 지문** ④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되,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2번 문제 4번 지문 해설** ④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되, 비밀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밀디자인에 대해서는 과실의 추정 규정이 배제된다(디자인보호법 제116조 제1항).
		수정 사유	문제-보기(지문)_오류

일부 정오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수정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법 개정으로 인한 정답 및 해설 오류

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